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 8. 22 선고 2018나76257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등 청구의 소]

재판경과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 8. 22 선고 2018나76257 판결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11. 1 선고 2017가단5164021 판결

전문

원고,피항소인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센트럴

담당변호사 이관희

피고,항소인 대한민국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원

담당변호사 박현민

변론 종결 2019. 7. 25

판결선 고 2019. 8. 22

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11. 1. 선고 2017가단5164021 판결

주문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피고는 원고에게 경기도 화성시 C 임야 304㎡ 에 관하여 2001. 3. 3.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.

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1. 인정사실'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.

2. 판단

가.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 여부○ 갑 32-36, 제1심 증인 M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원고는 1981.3. 2.부터 2001. 3. 3.까지 이 사건 토지에 수목을 식재하고 원고 소유의 인근 토지인 E, H로 통하는 농로로 이용하여 이를 점유한 사실이 인정되고,원고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평온·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(민법 제197조 제1항 참조).

○ 피고는,이 사건 토지가 피고의 관리 아래 마을 주민들의 일반 공로로 사용되었 고 원고가 이를 배타적으로 점유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,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면,이 사건 토지는 원고 소유의 인근 토지로 통하는 농로로 이용된 것으로 보이고, 울타리를 치는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의 출입을

통제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점 유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,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, O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1. 3. 3. 취득시효 완성을 원 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나. 피고가 취득시효 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

1) 피고의 주장

O 2016 . 3. 11.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으므로, 피고는 취득시효 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.

O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무가 없다.

2) 판단

O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별도로 사정명의인 등이 존재하였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.

O 민법 제252조 제2항은 '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한다'고 정하고 있고, 국유재산법 제12조에 의하면,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무주의 부동산에 관하여 6개월 이 상의 기간을 정하여 공고를 하고, 그 기간 내에 이의가 없으면 국유재산으로 소유자 등록을 할 수 있다.

O 위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, 국유재산법이 정하고 있는 국가귀속 절차는 단순히 공부상의 등록절차에 불과하고 이로써 권리의 실체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,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을 때 비로소 국 가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는 없고, 무주 부동산은 국가귀속 절차를 거쳤는지 불문하고 그 자체로 국가 소유에 속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(대법 원 1997 . 11. 28. 선고 96다30199판결, 대법원 1999 . 3. 9. 선고 98다41759판결 등 참조).

O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국가귀속 절차를 거쳐 소유권보존등 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새롭게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, 피고는 취득 시효 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.

o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[한편 이 사건 토지가 무주의 부동산이 아니라면 국가가 이를 무주 부동산으로 취급하여 국유재산법령의 절차를 거쳐 국유재산으로 등 기를 마치더라도 국가에게

소유권이 귀속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(대법원 1997.11. 28. 선고 97다23860판결, 대법원 2005. 5. 26. 선고 2002다43417판결 등 참조), 피고가 취득시효 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].

3. 결론

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.

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이광영판사 이성호판사 최한돈